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부산광역시</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한국정보기술단(주)</td><td>평가기간</td><td>2025.06.04
~
2025.07.25</td><td>평가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5">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사이버지방세청/무인수납 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안정적인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편리한 납세환경 제공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확충에 기여
-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원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맞춤형 납부수단 제공
-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응 개발 필요</td></tr>
<tr><td>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td><td>추진예산</td><td colspan="2">-기운영시스템-</td></tr>
<tr><td></td><td>추진주체</td><td colspan="2">부산광역시(세정정책담당관)</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세 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td><td>추진유형</td><td colspan="2">□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td><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5">-</td></tr>
<tr><td></td><td>주요내용</td><td colspan="6">- 자치단체별 수납관리에서 통합수납 시스템 구축
- 일일수납일계 일원화 및 표준화된 세무행정 업무 구축
- 체납자료 모바일 서비스 구축으로 디지털 고지·수납 시스템 구축
- 대민서비스 통합을 통한 납세편의 서비스 강화
- 모바일 전자 문서 관리
- 납부방식별 납부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구청별 집계/수기분
- 자치구별 납부계좌 관리
- 접속자 통계
- 수기신고 납부 통계</td></tr>
<tr><td></td><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대응 개발 필요</td></tr>
</table>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근거, 제공하는 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작성)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개요	사이버 지방세청 회원 명단	735,606 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번호	-	회원관리
	사이버 지방세청 지방세,세외수입 등 부과 내용	4,723,784 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고지번호, 가상계좌번호	-	과세자료 정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개선
	무인수납 시스템 지방세,세외수입	782,027 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번호	**제공받는자** 행정안전부(위텍스) **제공근거** 지방세기본법 **제공항목** 납세자번호, 카드번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환경 개선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수집, 보유·이용, 제공, 위탁, 파기 등 Life Cycle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

평가업무		처리 근거	처리 개인정보	주관부서	개인정보영향도
사이버지방세청	모범납세자 조회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필수]**납세자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정정책담당관	5
	지방세 지원신청	지방세 기본법 제26조	[**필수**]납세자주민번호, 성명, 주소, **[선택]**전화번호	세정정책담당관	5
무인수납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제135조, 동법시행령 제95조	**[필수]**납부(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번호, **[선택]**예금주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차량번호 등	세정정책담당관	5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세입금정보	(차세대)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제135조, 동법시행령 제95조, 지방행정	**[필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선택]**전화 번호, 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폰번호,	세정정책담당관	5
	(차세대) 세외수입				
	환경개선				

평가업무		처리 근거	처리 개인정보	주관 부서	개인정보 영향도
센터	부담금	제재부과금 법제4조	가상계좌번호 등	세정정책담당관	5
	사용자 정보		사용자ID, 비밀번호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1.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항목변경(3항목) 1.1 변경항목: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3항목) 1.2 변경사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고시 개정 2. 특정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항목제외 전체(16항목) 2.1 제외사유: 해당 사항 없음
	주요 평가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개인정보보호조치 분야>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행정자치국장으로 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계획 분야>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점검 후 결과 보고 및 조치등을 시행하고 있음. <개인정보파일 관리 분야>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음. <개인정보 침해대응 분야> 침해사고 시 신고 방법 및 연락처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 <정보주체 권리보장 분야> 내부관리 계획에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과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분야>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와 대상시스템에 접근하여 운영하는 위탁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접근권한 관리분야>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별 계정을 부여하여 책임추적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적용, 중요 정보 접근시 비밀번호 재확인, 강화된 인증 방식 적용, 로그 실패 횟수 제한, 최대접속제한,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 접근권한 변경/말소 및 내역 기록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접근통제 분야> 접근통제 시스템의 설치, 안전한 접속수단 및 인증 수단 적용,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암호화 분야> 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 저장, 암호키 생성. 이용.보관. 배포 및 파기 등의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분야> 응용시스템 및 DBMS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분야> 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담말기에 대한 백신의 설치, 최신 업데이트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3.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험요소**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분야>

		화면캡처 방지, 마우스 우측버튼 제한, 임시파일 및 캐시 통제 등 방지 보호조치는 적용되지 않고 운영중으로 임시파일 및 캐시 등에 쿠키등과 같은 정보를 통해 시스템 정보 등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화면에는 화면갭쳐 방지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비하는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물이 유출되는 경우 유출된 기관, 출력자 및 출력시간 등이 없으면 유출시 책임추적성 확보가 어려울수 있으니,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을 인쇄시 해당 기관의 명칭 및 로고, 일련번호, 출력자 성명, 출력시간 등을 표시하여 인쇄하여야함.
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1.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식별된 위험이 없어 개선계획이 없음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식별된 위험이 없어 개선계획이 없음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식별된 위험이 없어 개선계획이 없음.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 4.8.2 중요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안 - 4.8.3 개인정보 출력물 보호조치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1. 회원가입에 의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재 회원관리는 운영 안함.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여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중요한 개인정보를 저장시 DRM을 적용하여 보호를 하며, 정기적으로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평가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별로 이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음. **1.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평가한 결과 4개 분야 10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2.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평가한 결과, 3개 분야 6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평가한 결과, 5개분야 25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평가한 결과, 9개분야 36개 항목중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에서 위험이 식별되었으며 개선이 필요함.